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33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맞춰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요건의 성별 비율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 각 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분류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 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안 제5조 본문을 제외한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p>
<신 설>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p> <p><u>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u></p> <p>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p> <p>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p> <p>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p> <p>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p> <p>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p> <p><u>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u></p> <p>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p> <p>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사업</p> <p>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성별 격차 가능성이 큰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p> <p>4. ~ 6. (삭제)</p>

<p>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 ----- -----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성평등지수</u>”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u>지수화된 값을 말한다.</u></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u>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u></p> <p>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p> <p>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p> <p>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u>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u></p> <p>나. <u>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u></p> <p>다. <u>사업 운영에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u></p>
<p>제5조 ~ 제7조(생략)</p> <p>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u>구성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u>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